

다 면 평 가 자 체 점 검 표 (유·초등용)

영역	점검 내용	점검결과(상세내용)	비고
다면평가 지표	다면평가(정성, 정량평가) 지표 선정시 전체 교원 의견수렴 <확인사항> -추가·삭제·수정 가능한 평가지표에 대해서 학년초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하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심의하되,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면 따라야 함	수렴함 2026.3.12., 2026.3.19., 2026.3.23. 2026.3.30., 2026.4.8. 5회 회의, 3회 교원투표 실시	
	다면평가(정성, 정량평가)의 평가요소 및 배점 변경 여부 <확인사항> -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변경 불가	평가요소, 배점변경없음	
	정성평가방법에따른평가요소중 ‘ 학습지도 ’ 평가지표의추가·삭제·수정 <확인사항> -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(보건,영양,사서,전문상담교사 등)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, 삭제, 수정(학습지도 외 타 평가요소의 평가지표는 동일해야 함, 동일양식 사용)	비교과 교사 학습지도 평가지표 확인 (2026.3.23. 교직원협의 의견 수렴 및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심의)	
	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지표의 추가·삭제·수정 <확인사항> -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 가능함. -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와도 동일양식 사용 (평가기준/세부항목은 다르게)	정량평가지표 수정 (2026.3.12. 교직원협의 의견 수렴 및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심의)	
	정량평가 평가지표 중 배제 반영 사항 준수 여부 <확인사항> -경력, 복무요인, 징계·행정처분을 반영하지 않음 (육아휴직자 불리한 처우 금지) -정량평가 평가지표에 관리자 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-정량평가 점수 처리기준이 있으며, 순위에서 단순 경력, 생년월일 반영하지 않음	준수함 (3가지 모두 반영하지 않음)	
	전직원에게 안내 여부 <확인사항> -소속 교원 중 타시도 교환(파견), 휴직·파견·직위해제 중인 자에게도 안내	안내함 (2026.4.9. 메시지 및 카톡전송)	
다면평가 관리위원회	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의 적정 여부 <확인사항> -교감은 위원장/ -위원은 교사 3~7명으로 3월 말 이전 구성 -각 분야별(학년별, 업무분장, 교과군 고려) 대표성 있는 교사로 구성 -비교과교사(보건,영양,사서,전문상담교사 등) 1명 이상 참여 권장 -수석교사, 병설유치원 교사, 기간제교원은 초등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 불가 -다면평가관리위원 명단은 공개	적정함 (초등다면평가위원 초등교사 7명 중 비교과교사 대표자 1명) (유치원다면평가위원 유치원교사 4 명)	
다면평가자	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및 방법 결정 여부 <확인사항> -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교 근무기간, 교육경력, 교과, 학년,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의 기준 마련 -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추천, 호선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제2항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 못했을 경우 학교장이 지정 -다면평가자 선정은 평가 직전(11월 예정)에 실시하고, 비공개 원칙임을 계획에 명시	다면평가 회의록 명시함 (2026.4.9. 내부결재) 계획수립 시 반영 예정	
	다면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(평가 결과의 보안 및 평가의 확보) <확인사항> -다면평가자 사전교육도 비공개(개인별) 진행(다면평가자 끼리도 비공개) -다면평가자 평가 시 강조할 사항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음 (객관성 유지, 공정한 평가, 다면평가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, 보관하며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장치를 사전에 공지) -다면평가자 서약서 작성 보관	다면평가 회의록 명시함 (2026.4.9. 내부결재) 계획수립 시 반영 예정	
다면평가 대상자	다면평가 대상자 선정 <확인사항> -2027.2.28.자 공립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(정규교사)으로서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한 자(파견(감) 교사, 원로교사 포함) -제외대상: 2개월 미만 근무자, 파견(움)교사, 수석교사, 퇴직자, 기간제교원, 산학겸임교사, 시간강사, 2개월 이상 근무 후 2027.2.28.이전 퇴직자, 2026.8.31.자 정년 면직	다면평가 회의록 명시함 (2026.4.9. 내부결재) 계획수립 시 반영 예정	
학교간 상호컨설팅 결과	우리학교를 컨설팅한학교	상현초 교(원)감박재철	효자초 교(원)감이춘구
	의견및반영	1. 육아휴직 교원은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지 않고 12개월 근무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요청→ 적용함. 2. 정량평가 기준으로 기간제 교원을 평가할 시 비교과교사인 보건, 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	1. 점수표 및 확인란이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2. 검토자 및 본인 확인란, 전담 및 비교과 교사의 배점란이 구조화 됨 3 담당 업무 중 "집중보호 학생"에 대한 가점도 있는 등 학교의 특징을 반영한 기준안 임.

2026. 4. 10 작성자(평정자) 수지 초등학교 교감 문주리 (인)

2026. 4. 10 작성자(평정자) 수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문주리 (인)